

2026년도 제1회 제주우편집중국 상시계약집배원(공무직) 채용 공고

제주우편집중국 시행 2026년도 제1회 상시계약집배원(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7.

제주우편집중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담당업무
상시계약 집배원 (공무직)	1명	제주우편집중국 (화북동집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소포 및 국제특급우편물(소포) 배달 ◦ 우체국소포 및 국제특급(EMS) 방문접수 ◦ 위 관련 부대업무

2. 근무 조건

- 신분 : 공무직 근로자(비공무원)
 - *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수 : 기본급 + 수당
 - 기본급 : 월급 2,016,880원
 - 수당 : 운전수당, 직무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급식비, 경영평가상여금
 -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 기타 :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7:30~16:30)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 * 특별소통기간 등 우체국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 상시계약집배원의 업무특성
 -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개당 20kg 상당(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처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원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 단, 관리 규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나. 자격증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소포차량 운전이 가능한자(소포차량: 1톤 탑차 수동형 포함)
 - ※ 2종 보통면허 중 ‘조건:A(자동)’ 면허 소지자는 수동형 1톤 탑차 운전이 불가능하여 제외

다. 지역제한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 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 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우대요건(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단, 법정 가점은 법률에 따라 전형별로 가점 부여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다. 근무경력

- 상시계약집배원의 경우
 - 집배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체국소포원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택·통상·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 방법

채용분야 \ 시험단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상시계약집배원 (공무직)	서류전형	실기(체력검정)	면접시험

※ 제2차 실기시험과 제3차 면접시험은 같은 날 실시함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배점	심사항목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충실·성실성	정보화 자격증	무사고 경력	취업지원 대상자 등
100점		40점	20점	20점	10점	5점	5점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 체력 검정(2종목) : 팔굽혀펴기, 소포상자 이동하기

- 검정기준표 : 붙임5 참조

※ 위 체력검정(2종목) 모두 “가”로 판정 시 실기시험에서 “합격” 처리

※ 실기시험 검정기준의 나이는 최종시험(실기·면접시험일) 기준에 따름

○ 체력 검정 면제 :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제출자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무료)

※ 제출기한: 원서접수일부터 실기시험 응시 전까지

※ 국민 체력인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 체력 100 홈페이지
(<http://nfa.kspo.or.kr>)」 참조 및 제주체력인증센터(☎ 759-8795~6) 문의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 >

① 소통 · 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 · 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 · 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 · 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참조

○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모집공고 : 2026. 7. 7.(화) ~ 7. 14.(화)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7. 10.(금) ~ 7. 14.(화) 18:00까지

다. 원서교부 :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라. 접수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문의사항은 고용24 콜센터(1577-7114, 1544-4430)로 문의

※ 최종 접수 여부는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 관리 - 알선/입사지원 내역에서 반드시 확인,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하여 안내

마. 구비서류 첨부 : **온라인 접수시 PDF·JPG 파일(응시분야_성명_서류명) 첨부**
또는 등기우편 제출(온라인 첨부가 어려울 경우)

※ 등기우편 제출

- 접수처 : 제주시 1100로 3307, 제주우편집중국 2층 지원기술과 채용담당 앞

구비서류 재증 우편번호 : 63087

- 우편 제출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등기우편 제출자는 반드시 도착여부 확인)

-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함**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7. 16.(목), 제주우편집중국 홈페이지 게시

나. 실기 및 면접시험 : 2026. 7. 20.(월),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 실기시험 응시 전까지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제출 시 실기시험 면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 23.(목), 제주우편집중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제주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게시

8.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온라인 접수시 제출 불필요)【붙임 3】

라.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 4】

마.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경력(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이 표시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 운전면허경력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 주소의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자.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체력 100」 인증서는 실기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취득분을 실기시험 전까지 제출할 경우 체력검정 면제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제주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재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제주우편집중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주우편집중국 방문신청, 팩스(0505-005-2306) 또는 이메일(tax69000780@korea.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제주우편집중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8.24.**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라.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시계약집배원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아.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자.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격리조치로 면접 참여가 어려운 자가 면접 전날 18시까지 채용주관부서에 신고(통지서 포함)할 경우 별도의 비대면 화상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기시험은 비대면의 방법으로 공정한 시험 진행이 어려우므로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합격자(선발인원의 3배수 내)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064-710-5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표준이력서 양식 (예시)

(앞장)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경력()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주민등록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2. 교육사항				
직무관련 직업교육	교육 과정명	주요내용	기관명	교육기간
3. 근무 경력사항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 기입)				
근무기간	구체적 업종	직위/역할	담당업무	비고
4. 운전 및 정보화 관련 자격사항 (채용 자격요건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5. 정보화 등 자격사항 (채용 우대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뒷장)

6. 직무관련 기타 활동			
활동구분	소속조직/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7. 특기사항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8. 기타 우대사항			
구분	내용		해당여부
지역인재			<input type="checkbox"/>
기능인재(고졸인재)			<input type="checkbox"/>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9. 운전경력사항 안내			
<p>※채용이 확정된 경우 운전경력사항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사고, 법규위반 사항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위와 같은 운전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p>			
<p>1.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 향후 위 기재 사항 중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p>			
지원일자:		지 원 자: (인)	

【붙임 2】

자기소개서

성명		응시직종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지원 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본인의 장·단점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만일 우정사업 종사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정보, 민감정보(사상, 신념(종교) 등)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기재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

작성 자 :

(서명 또는 印)

【붙임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 결과 채용공고 혹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에 위배되는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_____(서명)

※ (범죄경력 자료 조회·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

※※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에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 5】

체력측정 기준표

성별/종목/연령대			가(합격)	부(불합격)
남자	팔굽혀 펴기 (기준시간 : 1분)	20대	25이상	24이하
		30대	21이상	20이하
		40대	19이상	18이하
		50대	13이상	12이하
	소포상자 이동하기		20kg소포상자를 10m 거리에 1회 왕복하여 1분내 이동	20kg소포상자를 10m 거리에 1회 왕복하여 1분 초과하여 이동
여자	팔굽혀 펴기 (기준시간 : 1분)	20대	15이상	14이하
		30대	15이상	14이하
		40대	14이상	13이하
		50대	10이상	9이하
	소포상자 이동하기		20kg소포상자를 10m 거리에 1회 왕복하여 2분내 이동	20kg소포상자를 10m 거리에 1회 왕복하여 2분 초과하여 이동

※ 실기시험은 실기시험 장소환경에 따라 방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응시종목 중 2종목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실기시험 방법

종목	측정방법
팔굽혀 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려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이 90도 이상 굽혀 가슴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소포상자 이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출발선의 소포상자 앞에 선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두 팔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10m를 이동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도착 장소에 준비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어깨에 메고 빠른 걸음으로 반대편으로 10m를 이동한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p>* 몸놀림과 소포 취급 태도를 통해 소포 등 우편물 취급의 가부 여부를 판단</p>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우편집중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